

# 第280回國會 政治改革特別委員會會議錄 第 2 號

(臨時會)

國會事務處

日 時 2009年1月20日(火)

場 所 行政安全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9.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 부여와 관련한 선거법 등 개정의 신속한 처리에 관한 청원

**審査된案件**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 3
- 의사일정 상정의 건 ..... 3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유기준·송영선·이경재·조전혁·유성엽·신상진·신학용·구본철·권경석·안경률·양정례·이한성·김무성·강성천·김희철·정하균·홍정욱·안상수·정양석·이진삼·임태희·이정선·정해결·김성수·나경원·손범규·김동성·심재철·안홍준 의원 발의) ..... 3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윤석 의원 대표발의)(이윤석·우윤근·주승용·김성곤·최인기·송민순·송훈석·조영택·강창일·김부겸·허범도·변웅전·김영록 의원 발의) ..... 4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김희철·김우남·송민순·최인기·김재윤·강기정·이진삼·이윤석·김종률·박기춘·우윤근 의원 발의) ..... 4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선 의원 대표발의)(박준선·이한성·유기준·안상수·강성천·김성태·정미경·홍일표·이인기·남경필·김효재·구본철·황영철 의원 발의) ..... 4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조원진·김효재·박종희·성윤환·송광호·유재중·윤영·이명규·이진복·이한성·정진섭·홍정욱 의원 발의) ..... 4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김성곤·송영길·양승조·오제세·서종표·장세환·이용삼·최문순·강봉균·신학용·강기정·전병헌·김동철·이종걸·김재윤·김재균·김우남·김영진·천정배·김성순·전혜숙·박기춘·박선숙·주승용·전현희·김유정·유성엽·우재창·김종률 의원 발의) ..... 4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권경석·장제원·유정현·이범래·원유철·정갑윤·신지호·김태원·안경률·이인기·이은재·김성조 의원 발의) .....	4
9.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선 의원 대표발의)(박준선·이한성·유기준·안상수·강성천·정미경·홍일표·이인기·남경필·김효재·구본철·황영철 의원 발의) .....	4
10.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
11.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김성곤·송영길·이춘석·김영진·김재윤·김상희·안규백·전현희·강창일·김성순·장세환·최문순·박상은·조정식·강기정·김유정·유선호·우윤근·정장선·신낙균·원혜영·원희룡·김성희·정옥임·유성엽·황우여·우제창·김종률 의원 발의) .....	4
12.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권경석·장제원·유정현·이범래·원유철·정갑윤·신지호·김태원·안경률·이인기·이은재·김성조 의원 발의) .....	4
13.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 부여와 관련한 선거법 등 개정의 신속한 처리에 관한 청원(홍준표 의원의 소개로 제출) .....	4

(10시22분 개의)

○**委員長 趙鎭衡**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 위원회에 새로 오신 수석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연호 수석전문위원이십니다.

(수석전문위원 인사)

다음은 지난번에 간사로 선출된 민주당 강기정 간사와 지난 회의에서 인사를 하지 못하신 위원님들이 인사 말씀을 잠깐씩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기정 간사,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정 위원** 행정안전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강기정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趙鎭衡** 신지호 위원님, 지난번에 없으셨는데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호 위원**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委員長 趙鎭衡** 이은재 위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恩宰 委員** 한나라당의 이은재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열심히, 또 배워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趙鎭衡** 그러면 위원님들 인사할 분이 황진하 위원, 이종걸 위원님이 계신데 오늘도 안 오셨기 때문에 다음에 하기로 하고,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법안 상정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회의에 출석해야 하나 다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장관, 차관이 다 이번에 인사교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실국장들이 대신 참석했는데 양해를 해 주시고, 또 오늘 실질적인 사안은 대개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사안이고 행정안전부 사안이 좀 적을 것 같아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이 생각이 되니까 그렇게 좀 판단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사 말씀을 못 하신 박준선 위원, 우리 특별위원회에 들어오셨는데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지난번에는 운영위원회랑 회의가 겹쳐서 다녀오는데 끝났다 그래서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한나라당 용인시 기흥 출신의 박준선 위원입니다.

행안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재외동포법 관련해서 논의가 진행 중이었는데 제가 여기에 오게 된 것은 제가 발의한 법안에 중요한 재외동포 관련 법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작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해서 재외동포에게 참정권을 회복시켜 줘야 된다고 한 결정을 우리가 국회에서 시한을 못 지켰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살아온 경험상 그리고 재외동포와의 각별한 인연상 재외동포에 관련된 참정권 회복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정치적인 입장과 이런 것이 있지만 일단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리고 참정권의 회복을 기

다리는 700만 해외동포들에게 하루빨리 참정권을 회복시켜 주는 법안이 우리 정개특위에서 성과를 내기를 기대합니다.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과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趙鎭衡** 다음은 황진하 위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안 계셔서 인사를 못 하셨어요. 지금 정개특위에 들어와 계시니까……

○**黃震夏 委員** 경기 파주 출신의 황진하 위원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법안 통과시키기 위해서 함께 일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회의 때 제가 못 온 것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스탠퍼드대학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보와 관련된 국제회의가 있었는데 거기 참석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돼서 첫 번째 회의에 못 왔습니다.

방금 전의 박준선 위원 말씀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어떻게든 우리 700만 동포들이 가지고 있는 염원이기도 하고 또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 해외에 나가 있는 동포지만 그분들이 해외에 나가 있으면서도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의 주권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은 모두가 공감하는 상태인데 이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선관위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한계와 또 참정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그런 법의 정신하고 연결시켜서 가장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 내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일하게 돼서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27분)

○**委員長 趙鎭衡**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이 3당 간사와 협의한 결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법안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소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 1개로 하고 소위원 수는 8명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의 네 분, 민주당의 두 분, 선진과창조의모임의 한 분, 비교섭단체 한 분으로 구성하기로 합

의를 했습니다.

소위원으로서는 한나라당에서는 권경석 위원님 하고 세 분을 추천해 주셔야 되는데 아직 추천이 안 들어왔고요. 민주당에서는 강기정 위원님, 최인기 위원님, 선진과창조의모임에서는 김낙성 위원님, 비교섭단체는 노철래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권경석 간사께서는 세 분 명단을 바로 좀 내주시기 바라고, 소위원장으로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한나라당의 권경석 위원을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말씀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권경석 간사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석 위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趙鎭衡** 간단해서 좋네요. 감사합니다.

법안심사소위원장님께서 공직선거법 등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의사일정 상정의 건

(10시31분)

○**委員長 趙鎭衡** 다음 법안 상정에 앞서서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은 발의된 지는 오래되었지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심사를 오래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개혁위로 이제 회부되어 왔습니다마는 정개특위로 회부된 지는 15일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이들 안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유기준·송영선·이경제·조전혁·유성엽·신상진·신학용·구분철·권경석·안경률·양정례·이한성·김무성·강성천·김희철·정하균·홍정욱·안상수·정양석·

이진삼·임태희·이정선·정해결·김성수·나경원·손범규·김동성·심재철·안홍준 의원 발의)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윤석 의원 대표발의)(이윤석·우윤근·주승용·김성곤·최인기·송민순·송훈석·조영택·강창일·김부겸·허범도·변용전·김영록 의원 발의)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김희철·김우남·송민순·최인기·김재윤·강기정·이진삼·이윤석·김종률·박기춘·우윤근 의원 발의)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선 의원 대표발의)(박준선·이한성·유기준·안상수·강성천·김성태·정미경·홍일표·이인기·남경필·김효재·구본철·황영철 의원 발의)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조원진·김효재·박종희·성윤환·송광호·유재중·윤영·이명규·이진복·이한성·정진섭·홍정욱 의원 발의)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김성곤·송영길·양승조·오제세·서종표·장세환·이용삼·최문순·강봉균·신학용·강기정·전병헌·김동철·이종걸·김재윤·김재균·김우남·김영진·천정배·김성순·전혜숙·박기춘·박선숙·주승용·전현희·김유정·유성엽·우제창·김종률 의원 발의)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권경석·장제원·유정현·이범래·원유철·정갑윤·신지호·김태원·안경률·이인기·이은재·김성조 의원 발의)

**9.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선 의원 대표발의)(박준선·이한성·유기준·안상수·강성천·정미경·홍일표·이인기·남경필·김효재·구본철·황영철 의원 발의)

**10.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1.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김성곤·송영길·이춘석·김영진·김재윤·김상희·안규백·전현희·강창일·김성순·장세환·최문순·박상은·조정식·강기정·김유정·유선호·우윤근·정장선·신낙균·원혜영·원희룡·김성희·정옥임·유성엽·황우여·우제창·김종률 의원 발의)

**12.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권경석·장제원·유정현·이범래·원유철·정갑윤·신지호·김태원·안경률·이인기·이은재·김성조 의원 발의)

**13.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 부여와 관련한 선거법 등 개정의 신속한 처리에 관한 청원**(홍준표 의원의 소개로 제출)

(10시44분)

○**委員長 趙鎭衡**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13항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주민투표법 개정안,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 부여와 관련한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 대부분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미 대체토론과 공청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안건 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위주로 진행하되, 대체토론은 정치특위의 구성에 따라서 새로 참여하게 되신 위원님들께 우선 질의 순서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짧은 일정 관계로 공직선거법 등에 대한 공청회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미 실시하였고, 공청회 자료도 위원님들께 미리, 그동안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죽 있었던 모든 자료를 회의록과 함께 다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간사간에 협의를 마쳤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2건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백환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환기** 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드린 검토보고서고, 다음 책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한 개정의견이고, 또한 쪽 자료는 외교통상부에서 제출한 개정의견이 되겠습니다.

우선 그 유인물을 중심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3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저희 위원회에 제출된 법안들,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은 유기준 의원, 이윤석 의원, 강창일 의원, 박준선 의원, 조원진 의원, 김성곤 의원,

권경석 의원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셨고,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준선 의원께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안, 김성곤 의원, 권경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셨고,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 부여와 관련한 선거법 등 개정의 신속한 처리에 관한 청원은 홍준표 의원의 소개로 제기된 안건들입니다.

이 중 정부에서 제출한 주민투표법 부분은 그 주민투표법 개정에 대한 내용이 방대해서 그중의 일부 내용(재외국민과 관련된 부분)은 요약해서 나온 부분이 권경석 의원의 대표발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모든 안건에 대해서 공통점은,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 또는 투표권 부여에 관련된 부분이고, 유기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은 원양어선을 타고 조업을 하는 선원에 대한 선거권 부여이 경우도 역시 대한민국 영토를 떠나 외국에 있기 때문에 재외동포의 개념하에서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선상투표제 도입입니다.

개정안은 부재자신고인 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으로서 선거일에 원양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은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구·시·군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송신하는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선상 투표제도를 도입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일치 결정이 있었습니다만, 이 조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개정하라는 시안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선상투표제도가 비밀선거의 원칙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최근 일본에서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는 암호화 팩시밀리 등의 첨단 전자장치 등을 통하여 비밀투표의 보장성이 담보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선상 투표 시 기술적 어려움은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양어선의 경우 선장에게 사실상 사법권이 부여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장에 의한 투표 강제행위 등이 있는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사전 및 사후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투·개표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선결 과제인 것으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 부여가 되겠습니다.

6건의 개정안과 선관위의 정치관계법 개정의

건, 또 외교통상부의 개정의견을 집약한 부분이 35페이지 횡단에 있는 재외선거 관련 개정안별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입 대상 선거에 보게 되면 여섯 분의 안이 나와 있는데, 공통적으로 대통령(임기만료)의 경우,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에 적용하자는 안이 압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유기준 의원안은 국회의원 지역구까지 포괄하는 안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 또는 해외동포들이 사실상 역투표행위 내지는 특정한 지역구에 위장 전입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문제들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2번 투표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국외 거주자 및 국외 거주 예정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재외동포의 개념이 '투표일 날 대한민국 영토 안에 없는 모든 분'이라고 간주를 하게 되면 외국에 나가 계시는 분들은 단기 체류자, 여행자와 상사주재원, 대사관에 근무하는 분들, 또 재외국민의 출입국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영주권을 취득한 자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결정은 재외국민의 개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시민권을 갖지 아니한 자'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적법상 이중 국적자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중 국적자가 아닌 모든 국민한테 투표권을 주어야 되는 그런 해석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투표 대상자 중에서, 국내에서 외국으로 떠나서 거주하면서 한국과 연결이 상당 부분 끊어진 부분에 대해서 참정권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일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독일의 입법례에서는 제한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에 국외 부재자 신고처 부분은, 재외공관장을 경유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보내는 것으로 의견이 지금 수렴되고 있고요. 선거인명부 작성권자는 중앙선관위 또는 구·시·군의 장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모든 선거인명부 작성이 구·시·군의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의견 수렴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투표용지 발송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 있는 투개표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그러면 이 표를 참조해 주시고, 39쪽이 되겠습니다.

39쪽 하단에 재외국민 현황이 있습니다. 아까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2007년 9월 말 기준으로 외국에 나가 있는 재외국민 중에 유권자로 추정이 되는 분들은 약 300만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영주권자가 147만, 체류자가 154만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40쪽 하단을 보시겠습니다. 재외국민 선거제도는 국외 거주자 또는 국외 거주 예정자들로서 국내 선거에서 투표가 불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재자투표 또는 거소투표의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도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운동 방법, 투표방법,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 등에 있어서는 국내 선거와 다른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과 또는 해결 방안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1쪽, 선거관리 인력입니다.

국내에서는 중앙, 시도, 구·시·군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해서 위원·직원이 선거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를 실시하는 때는 선거부정감시단을 두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 조사·단속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또는 숙련된 투표인력이 있어서 선거관리의 전문 인력 확보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에 반해 국외에서는 선관위 직원·위원들처럼 선거사무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선거를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는 인력이 적고, 투표 등 일반적인 선거관련 행정사무를 담당할 인력도 적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재외국민이 밀집 거주하는 주요 공관(5만 이상 또는 10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서 가지고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대륙별 거점 공관에 선거주재관을 파견해 가지고 선거관리관을 보좌하여 국내의 선관위가 수행하는 재외선거 제도·홍보,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처리, 재외투표소 설치·운영, 재외공명선거 지원단 구성·운영, 재외선거사무 관련 종사자 교육 등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재외선거인명부 작성과 관련 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중 국적자 문제를 어떻게 배제하느냐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청을 받을 때 여러 가지 서류를 조회해서 받는다 하더라도 이중 국적자가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외교적인 관계로 그 나라 시민권자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그런 외교적 어려움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영주권자의 선거권 행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제출된 안 중에는 비례대표에 한정하는 안이 많이 있고, 또 일부 안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국내 선거지를 등록기준지로 할 경우에는, 특정지역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등록기준지를 변경할 경우에는 사실상 위장전입 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특정한 지역이 해외 선거 주민들에 의한 전략 지역으로 그렇게 올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종 주소로 할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산화 작업 이전에 출국한 분에 대해서 수작업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과, 다음에 일본에 계신 분들은 약 50만 명 되시는데 이분들이 국내에 주소록이 없기 때문에 등록기준지로 할 때 어느 지역을 선정하느냐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검토하셔야 될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투표 및 개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5쪽의 표를 보시면, 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투표를 하는 방법에, 의원님들이 제출한 안 중에 공관 투표, 공관 및 분소투표, 우편투표, 인터넷 투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관 투표는 대사관, 총영사관, 문화원까지 포함을 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재외국민이 공관에 직접 가서 투표를 하고, 장점으로서의 공정한 투표 관리와 치안이 보장된 공관에서의 안전한 투표, 투표함 이송 절차를 단축해서 안전한 투표함 관리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공관이 협소하기 때문에 투표 대기시간 과다로 투표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투표인의 접근성이 떨어져 투표율 저조가 예상됩니다. 대개 공관은 한인 밀집 주거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비즈니스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관의 테러 노출 가

능성이 높고 공관 보안의 노출성이 높고, 과도한 업무로 공관의 외교업무 처리에 장애가 있겠습니다.

공관 및 분소 투표의 경우는 공관 외에 한인회관, 한국학교, 한인 종교시설(교회·성당·법당 등)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도 재외국민이 공관과 추가 설치된 투표소에 직접 가서 투표를 하고, 상대적으로 공정한 투표 관리와 투표인의 접근성을 높여 가지고 투표인의 편의 보장 및 투표율 제고가 되나, 공관 외 투표소의 치안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다음에 투표함 이송 절차가 복잡해서 안전한 투표함 관리에 문제가 있겠습니다. 특히 분쟁 국가나 치안이 불안한 지역의 경우 보완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에 의원님들이 제출한 안 중에 우편 투표도 있었습니다. 현재 거소 투표의 개념이 되는데, 이 경우는 외국에 있는 유권자의 집에서 투표를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유권자가 집에서 투표 후 반송용 우표를 첨부해서 한국으로 보내는 부분이 됩니다.

장점으로는 유권자의 투표 편의성이 최대 보장되고, 이어서 투표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전체 우편투표만 실시할 때는 공관의 투표 업무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표용지를 해당국에서 공관으로 발송해서 공관에서 개표할 적에는 공관은 개표업무가 추가로 부담이 되겠고요.

이 경우 문제점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대리투표의 위험성이 높은데 어떻게 해소하느냐. 재외 유권자가 한국으로 반송 시 현행은 본인이 국제우편 요금을 부담을 해서 한국으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가는 것은 EMS서비스로 국내에서 대납을 해서 보내지만 외국에서 보내는 분은 국내에서 받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우표를 사 가지고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보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투표율이 좀 떨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그 요금을 어떻게 정산을 해 주느냐의 문제는 또 복잡한 행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또 인터넷 투표 부분도 안에 있었습니다.

재외 유권자 집 또는 컴퓨터 접근이 가능한 모든 장소에서 유권자가 컴퓨터에 접속해서 투표를 하면 유권자의 투표 편의성이 최대한 보장이 되고 투표 및 개표에 따른 행정 절차 및 업무가 획

기적으로 감축됩니다. 재외공관의 투표 관련 업무가 획기적으로 감축이 됩니다.

문제점은 인터넷 투표는 대리투표의 위험성이 여전히 높고, 컴퓨터의 서버나 프로그램 해킹 발생 시 투개표상 업무의 혼선으로 공정한 선거 관리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부분에서도 전자투표 부분은 정치권의 합의가 있기 전에는 선관위에서 집행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와 정치권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6쪽이 되겠습니다.

재외선거 개표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투표하는 방법이고, 개표하는 방법도 역시 장소를 중심으로 공관 개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구·시·군 개표, 인터넷 개표가 되겠습니다.

공관 개표는 투표한 장소에서 바로 개표를 하는 겁니다.

장점으로는 현지에서 신속한 개표가 이루어지고, 치안이 보장된 공간에서 안전한 개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투표함 이송에 따른 위험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다만 공관 외에 분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분소에서 공관까지 투표함의 안전한 이송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점으로는 공정한 개표 관리인 및 참관인 확보의 어려움이 있고 이에 따른 개표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 가능하고요.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투표 방법이 자식입니다. 유권자가 후보자의 이름 또는 정당을 적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판독을 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무효표를 어떻게 가리느냐, 이런 부분에는 굉장히 숙달된 선거 종사자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문제가 됩니다. 또 공관의 업무가 굉장히 가중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공관에서 투표한 투표함을 파우치로 보내서 외교통상부 본부로 와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본부로 왔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본부에서 개표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에서 개표할 때는 공정한 개표 관리가 되고, 중앙선관위에서 구·시·군으로 투표용지를 발송하는 절차가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표함 이송에 따른 위험부담 축소 및 개표기간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선거 전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

무가 정책을 수립해 가지고 일선 기관으로 하달하고 관장을 하는데 사실상 개표를 하는 업무를 받게 되면 특정한 시점에 업무가 과중되는 그런 부분의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여러 가지 의원님들 안에서 제시한 구·시·군 개표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아까 말씀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구·시·군으로 등기로 보내주면 발송한 지역에서 회송을 받아 가지고 구·시·군에서 개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공정한 개표 관리가 되고, 개표 업무의 분산화로 한 부서의 과도한 업무 편중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발송한 투표용지와 회송된 투표용지의 확인으로 투표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투표함 회송 절차에 따른 개표 지연 또는 투표함을 안전하게 이송하는데 따른 위험부담 부분은 남아 있겠습니다.

인터넷 개표는 바로 투표하게 되고 나중에 개표를 하면 간단한 방법이지만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컴퓨터의 서버나 프로그램 해킹 발생 시 타격이 굉장히 큰 부분을 어떻게 막느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외선거운동은 인터넷을 이용한 방법 등이 되겠고요, 다음에 48쪽에 재외선거 공정성 확보에 대해서는 국외선거법에 대한 공소시효를 현행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9쪽에 재외국민에 대한 국민투표권과 주민투표권 관련된 것은 국민투표일 또는 주민투표일 공고일 현재 그 관할구역 안에 국내 거주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을 포함하도록 하는 부분이고, 주민투표법은 현행 20세로 되어 있는 연령을 19세로 하향 조정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 존함)

○委員長 趙鎭衡 백환기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7분으로 하면 될 것 같아서 7분으로 하고 혹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신 분은 말씀하시면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은 선거법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으셨던 의원님들께서 먼저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먼저 한나라당의 박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김동철 위원 하시고요.

○박준선 위원 외교통상부에서 나와 계시나요?

○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대사 오갑렬 예.

○박준선 위원 지금 공관에서 투표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분소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지요, 선거와 관련해서는? 선거권을 가진 가장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하는 방법이 제일 좋고요, 그러면 선거권자의 어떤 의사가 선거 결과에 반영이 되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서 투표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숫자의 선거권자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 많은 분소를 설치하다 보면 실제로 위험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투표의 관리가 안 될 수 있고?

지금 외교통상부에서 볼 때 미주 지역과 일본·유럽 등 해 가지고 가장 현실 가능한 분소 설치 숫자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대사 오갑렬 그래서 결국은 인구 몇 명당 투표소를 설치할 것이냐에 따라서 한 3700명 규모일 경우, 그다음에 국내처럼 한 6000명일 경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LA나 뉴욕처럼 인구 밀집 지역의 공관 지역에서는 한 30~40개 정도의 투표소를 설치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추가로 좀 말씀드려도 됩니까?

○박준선 위원 예, 말씀하세요.

○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대사 오갑렬 그런데 저희들이 공관에 의견을, 문의를 해 보니까 상당한 정도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큰 문제가 보통 임차라는 게 '1년' '6개월' 이렇게 해야 되는데 1주일 동안 단기간 내에 해야 되고 또 그 장소에 대해서 미국 같은 데는 위생허가나 화재허가나 주차장 구비나 화장실이나 모든 그런 구비조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상당히 난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물론 우리 한인교회나 한인단체를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모든 조건을 갖추 수 있는지……

그다음에 가장 큰 애로사항은 국내와 다르게 해외에서는 치안의 확보에 대한 담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의 하나는 만약에 어느 지역의 투표 성향이 어떤 특정한 성향이라고 판단이 돼서 반대 진영에서 우리 동포들이 예상치 않게 투표함을 훼손을 한다랄지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받기도 어렵고……

○박준선 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이미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이나 다른 유럽 국가에서 재외국민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대사 오갑렬 예.

○박준선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 정부에서 협력이 잘 되지 있지 않겠어요, 그런 면에서는? 치안 요청이나 이런 것……

○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대사 오갑렬 그것은 좀 다릅니다.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 이런 데를 협조를 해 주는 수도 있고요, 어떤 데는 그냥 자율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말기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준선 위원 질문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일본이라든가 다른 외국의 재외국민 선거는 재외공관에서, 미주 지역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공관 또는 분소의 투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각국별로 분석을 해서 그리고 미국과의 협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내일 중으로 제출을 해 주세요.

○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대사 오갑렬 알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사무총장입니다.

○박준선 위원 사무총장께 물졌는데, 여러 가지 안이 있지만 지금 이대로 재외공관에서 또는 분소에서 한다면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 외국 가서 선거 관리를 할 인원을 얼마나 늘려야 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분소를 얼마를 설치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일단 저희가 현재 생각하는 것은 예상 투표자 1만 8000명 대상으로 해서 투표소를 설치한다고 볼 때 한 40명 정도 저희 직원이 나가서 지원해야 되는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러면 그 직원이 가서 상주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일정한 선거기간만 나가 있

으면 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제가 말씀드린 40명은 선거를 하기 한 4개월 정도 전에 파견을 나가서 투표소의 위치를 찾고 투표소를 만들고 또 재외공관에서 유권자 등록을 받을 때 그걸 지원해 주고, 공관 직원들 투표 관련 교육을 시키고……

○박준선 위원 알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그래서 일시적으로 한 4개월 정도 일단 체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예상 인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예상되는 증가 인원, 그다음에 관련 예산, 이런 것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알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다음에 지금 법무부에서 문제 제기한 재외국민 선거권의 결격 확인 절차 문제, 이 내용 보셨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박준선 위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 많나요?

재외국민 중에 주민등록번호나 우리나라…… 예컨대 이런 거예요. 지금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러면 수사기록이나 이런 여권번호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선거권 결격, 이것에 대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게 법무부의 의견인데, 우리 법 절차에 대해서 확보해야 되는 어떤 담보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법무부에.

외교통상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대사 오갑렬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은 일단은 대부분 영주권자는 없고요, 그게 전체의 반 정도 되지 않습니까? 한 150만 됩니다.

○박준선 위원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박준선 위원 지금 우리나라를 떠나 가지고 우리나라 전과는 없는데 미국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선거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지금 미국에 체류한다는 말씀입니까?

○박준선 위원 미국의 영주권자인데 미국에서의

범죄행위로 인해서 사기나 위조 범죄로 인해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수사기록이나 이런 거에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법상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의 법에 의해서 집행유예나 이런 것 받을 경우에도 형의 효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외국법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받든지 하는 것은 우리나라 선거법상 선거권하고는 관계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관계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그렇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래요? 그것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만약에 외국에서의 유죄가 선거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모든 재외국민의 외국에서의 어떤 유죄사항을 다 파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준선 위원** 불가능한가요, 현실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지금 법무부의 의견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자고요.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趙鎭衡** 다음은 김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광주광역시 광산구갑 출신 민주당의 김동철 위원입니다.

먼저 선관위 사무총장께 몇 가지 확인부터 해 보겠습니다.

17대 국회에서 또 18대 국회 들어서서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 참정권을 부여해야 된다고 하는 그 원칙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특정 정당이 반대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칙의 문제를 가지고?

다른 기술적인 것, 현실적인 이런 제반 문제점이 있어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과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해야 된다는 원칙의 문제를 분간하지 못하고 ‘특정 정당은 찬성하는데 특정 정당은 반대한다.’라고 하는 그런 악의적 선전이 있었다고 봅니까, 없었다고 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의견은 없었던 걸로……

○**김동철 위원** 없었지요?

제가 이 문제를 강조하는 것은 적어도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들, 정당이 그런 점에 있어서 그렇게 어떤 비열한 것을 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정개특위에서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 부여가 정말 여야 정파 간에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인 어떤 결론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만 이제는 철저하게 어떤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유·불리 문제를 가지고서 접근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당리당략적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민심이라는 바다는 때로는 잔잔했다가 출렁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정말 거대한 해일로 변하기도 합니다. 한때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그것이 영구히 지속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야말로 철저하게 어떤 원칙의 문제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참정권이라고 하는 보편성 원칙에 입각해서 선거의 공정성·편의성의 원칙과 함께 현실적이고 기술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관리능력·비용의 문제 등을 감안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야 상임위가 행정안전위원회도 아니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큰 틀에서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 문제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해서 여야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이 합리적인 어떤 결론을 도출해 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사무총장,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원칙적인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원칙적으로 공감합니다.

○**김동철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趙鎭衡** 김동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황진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震夏 委員** 황진하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 간단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질의는 행정안전부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한테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제출하신 개정안에서 보게 되면, 투표하는 장소에 대해서 투표소 투표로 일원화하는 것이 3건이고, 투표소 투표하고 우편투표를

같이 병행하자는 것이 1건, 그리고 투표소 투표, 우편 그다음에 인터넷 투표 중 하자는 것이 1건, 우편투표로 일원화하자는 것이 1건입니다.

그런데 해외공관 입장을 보게 되면 대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외교통상부 쪽에서 아마 생각도 같이 하셔야 될 텐데, 장소가 1개 층 정도만 임차해서 쓰는 그런 장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선거기간 중에는, 이런 데는 선거를 하기 위해서 그 기간 동안에 투표소로서 활용할 수 있는 공관이 없다 보니까 이게 본연의 업무가 굉장히 지장을 받거나 마비가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중국같이 기본적으로 해외 국민들에 대한 투표를 반대하는 그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국가 같은 데서는 치외법권 지대인 공관에서밖에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태도 제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제 판단은 이런 문제점을 생각했을 때 행정안전부 입장도 어려울 것 같고 외교부 입장도 어려울 것 같은데, 제일 첫 번째는 외교통상부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얼마만큼 있으니까 어떤 방법이 좋겠다, 우편투표를 더 해야 되겠다라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외교통상부 입장은 우선 뭘니까?

○**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대사 오갑렬**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관 투표나 투표소 투표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지적하신 대로 중국에서는 투표소 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우편투표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까 지적된 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대리투표의 위험성 문제입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영국이나 구라과, 여러 국가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예컨대 우편투표를 하는 경우는 반드시 등록할 때, 선거인명부 등록할 때 본인이 공관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 확인이 되어야 그다음에 우편투표가 가능하게 하면 되고, 그다음에 공관에 왔을 때 암호를 하나 지정하게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가, 나, 다, 라, 마’ 중에서 자기가 사전에 등록을 해 놓습니다. “내 암호는 ‘가’이다.” 그리고 나서 예를 들면 현지에 돌아가 가지

고 우편투표할 때 어떤 사람이 대표를 해서 “너,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를 찍어주라. A후보를 찍어주라.” 그랬을 때 A후보를 찍더라도 암호가 맞지 않으면 그게 무효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공개투표가 아니고 공개투표 같지만 비밀투표가 여전히 보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이 하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기술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리투표 문제가 해소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우송료 문제가 아까 보니까 지적되고 있는데, 본인이 회송할 때는 저희 공관으로 해 주면 저희가 외교화물로 서울에 보내면 되기 때문에 우송료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黃震夏 委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쪽에서의 입장을 사무총장님께 여쭙보는데요. 이런 장소의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관 입장으로 보게 되면, 제가 조사한 바로 보면 앵커리지출장소 같은 예가 공관원이 지금 현재 영사 1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원도 3명밖에 안 되는데, 이런 재외선거를 하려면 소요인력이 최소한 7명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인원도 부족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상태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장소라든지 또 인력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최소한도로 재외 투표소 투표하고 우편투표, 이 두 가지 방법은 병행해야 된다고 보는 게 제 입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선관위 입장은 어떻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저도 위원님 의견과 원칙적으로 의견을 같이합니다. 재외선거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공정성 확보가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표소 투표와 우편투표를 비교할 때 각각 다 장단점이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투표소 투표를 일단 최대한 실시를 하고요, 지역에 따라서는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곳이 있다든지 또는 너무 멀어서 거기 갈 수가 없다든지 또는 거동이 불편해서 도저히 투표소에 갈 수 없는 그런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우편투표를 하도록 허용하는 그러한 방안을 저희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黃震夏 委員** 그리고 외교 차관님께 한번 다시 비슷한 질의지만 여쭙 보겠습니다.

공정성 측면에도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이 지적이 많이 되었는데 재외선거관

리관을 현지의 공관 책임자가 같이 겸하는 방안이 검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대사 오갑렬 예.

○黃震夏 委員 그런데 외교통상부 입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분이 중앙선관위의 지휘·감독을 받고 또 인력 및 선거 소요 비용 이런 것도 별로 지원이 없이 책임만 지워지는 그런 상태가 될 가능성도 있고, 또 공정성 확보 면에서 나중에 전부 영사관이든지 공관이 책임을 져야 되는, 외교통상부 입장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결과가 오는 데 대해서 아마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거관리관을 누구를 임명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재외선거관리관 말씀인데 이런 것에서 외교통상부 입장은 뭐니까?

○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대사 오갑렬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내에도 있지 않은 제도입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할 때 재외공관장이 선거업무를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다만 선거 그 업무 자체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지정이 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공정성의 문제입니다. 행정부의 직원이 그런 책임자로 있다는 게 적절치 않고, 따라서 공관에서도 재외동포선거관리위원회를 국내 처럼 구성을 해서 중립적인 인사로서 관리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黃震夏 委員 한 가지만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委員長 趙鎭衡 예, 말씀하시지요.

○黃震夏 委員 이런 문제점 등을 생각했을 때 지금 고려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지금 법안 개정안 낸 분 중에서 특히 권경석 의원이라든지 김성권 의원 그다음에 조원진 의원 등이 내신 안을 보게 되면 ‘재외국민 단체 중에서 선거사무를 그래도 공정하게 볼 수 있는 단체로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그런 단체와 인사들을 이용해서 이런 임무를 부여하는 방법이 어떠냐’ 이런 걸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선관위 입장은 어떻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지금 투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외공관이 현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기에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재외 투표소를 설치하면 그곳에 저희 직원을 하나씩 파견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재외공관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중립적인 사람들을 좀 저희가 채용을 해서 저희 직원이 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의 통제하에 투표를 관리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黃震夏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鎭衡 황진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黃震夏 委員 고맙습니다.

○委員長 趙鎭衡 다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피선거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입법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선거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는 것이 선거운동의 공정성 그다음에 선거운동의 준법성이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선거의 아주 핵심적인 본질이 뭐냐 하면 직접·비밀 선거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어떻게 도입하느냐에 따라서 선거의 기본원칙인 직접·비밀 선거 원칙이 훼손이 되고 아니면 파괴가 될 뿐만 아니라 또 선거운동 방법이 공정하게 준법적인 절차로 보장이 되지 않으면 선거의 무용론까지 나올 그런 가능성이 있다, 특히나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 행사는 자칫 잘못하면 눈을 가리고 미인을 심사하는 그런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좀 해 가지고 도입을 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내가 말씀드리면서.

우선 말이지요, 투표소 설치와 관련해 가지고 재외공관의 경우는 치외법권이 적용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여지는데, 기타 재외공관이 아닌 일반 지역에 있어서 한국의 공직선거법에 의한 투표소를 설치해 가지고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 관리가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재외국민이 거주하고 있는 그 거주국에 대한 주권침해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외교부, 아까 대사님이시지요,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대사 오갑렬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중국입니다. 중국에서는 중국 내국민뿐만이 아니고 외국인의 그런 정치활동 참여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이나 자유국가에서는 그게 그렇게 주재국의 법에 위배되는 그런 심각한 문제는 없고요.

다만 경찰의 치안 확보에 지원받는 것 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스로 그것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아니, 됐어요. 너무 길면 시간이 가니까……

그러면 중국의 경우는 재외공관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투표소의 설치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외의 지역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상 용인된다는 거예요?

○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대사 오갑렬 법률상이나 사실상에 지금 현재로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박주선 위원 아니, 우리 국내법인 선거법을 가지고 미국 영토나 일본 영토에 가서 적용을 해 가지고 우리 선거관리요원이라든지 투개표 참관인이 가서 하고 있고, 투표행위가 비밀보장이 되고 직접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전혀 미국에서 문제를 안 삼을 수 있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대사 오갑렬 지금 재외국민투표 허가하는 것은, 실시하는 것은 사실 많은 나라가 이미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래서 이 문제,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도 검토해야 되겠지만 주재국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사전에 동의절차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대사 오갑렬 알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한번 여쭙보겠는데요.

아까 “우편투표와 투표소 투표를 병행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국내의 경우도 아주 부득이한 경우에 부재자투표에 의해서 우편투표가 인정이 됩니다마는 그동안에 일시 국외체류자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선원이라든지 유학생이나 등등 우편투표라는 부재자투표를 인정을 안 하는 것이 선거의 직접성과 비밀성이 훼손될 우려가 너무 크기 때문에 허용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우편투표를 인정하게 되면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최대한 투

표소 투표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투표소 투표만 했을 경우에 현실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러한 곳에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박주선 위원 아니, 그것은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재외국민에 대해서 투표권 주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지라도 선거가 장난이 아닌데 공개투표가 이루어져 버리고 대리투표가 이루어지고 간접투표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헌법 훼손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런 측면에서 접근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외국인의 외국에서의 선거운동은 선거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선거운동하는 것 말씀하십니까?

○박주선 위원 외국인, 예를 들면 미국인이 미국에서 하는 우리 선거행위에 대해서 불법적인 선거 관여를 했거나 선거운동을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그 부분은 국내법 적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주선 위원 불가능하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박주선 위원 그런 경우에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선거의 공정성과 엄정성이 아주 훼손되는 문제 도입이기 때문에 정말로 심각한 고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 파견된 외교관을 비롯한 공무원, 공직자 또는 준외교관 역할을 하고 있는 파견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해외동포재단이라든지 협력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사실상 선거개입 행위가 아주 비밀비재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역시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선거운동이기 때문에 포착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형벌에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뒤야 된다고 봅니다, 처벌 규정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분에 대한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는 지금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문제를 좀 고려하고 있고요.

○박주선 위원 공소시효 문제는 알겠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으로 결정

될 그런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박주선 위원 그다음에 북한 주민이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이나 국제법상 재외국민으로 인정을 받으니까, 안 받으니까?

법무부 나오셨어요?

○법무부국적통합정책단장 권영수 북한이탈주민은 재외국민으로는 인정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박주선 위원 법적 근거가 됩니까?

○법무부국적통합정책단장 권영수 북한 주민은 국적상으로 볼 때 외국인이 아니고 단지 우리 영토 내에 있는, 북한에 있는 우리 같은 주민이기 때문에 탈북주민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우리 국민으로서 인정을 받는 것이지 재외동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차이……

○박주선 위원 아니요, 재외동포라는 것이 지금 한국 땅,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밖에 있는 국민을 재외국민이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쪽의 주재국의 시민권이라든지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우리 국민이 아니야. 그랬을 때 지금 현재 북한 주민이 외국에 나가게 되면 재외동포예요, 아니에요? 북한 국적을 가지고 나가 있는 상태에서.

○법무부국적통합정책단장 권영수 북한 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 국민으로서 인정을 받지……

○박주선 위원 지금 연구했습니까? 법적 근거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법무부국적통합정책단장 권영수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지금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헌법상의 규정이 있는데다가 지금 남북교류협력법에 있어서도 북한 동포에 대해서는 일반 외국인하고 달리 취급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 문제에서 검토를 좀 해 주세요.

○법무부국적통합정책단장 권영수 예, 알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다음에 지금 일본에 있는 조총련 교포가 우리 대한민국 국적법상 재외국민입니까,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대사 오갑렬 조총련인 경우 이제 공관에서 적절한 절차를 밟기 이전에는 우리 국민이 아닙니다.

○박주선 위원 왜 국민이 아니에요?

○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대사 오갑렬 재외국민 등록을 통해서 국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 국

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주선 위원 아니, 재외국민 등록법에 의해서 재외국민 등록을 안 하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거나 그런 사람들도 재외국민으로 인정이 안 됩니까? 등록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예요.

○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대사 오갑렬 우선 국적 여부는 국적법에 따른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주선 위원 그래서 지금 막연하게 이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만일에 제일 조총련 교포가 재외국민 등록을 했을 때에 법률상의 허술한 점은 없는지, 그랬을 때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대사 오갑렬 알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를 하면요, 아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견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도 재외국민에 대해 선거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그것은 저희가 반드시 주창고 의견을 제출한 것이 아니고요, 국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도 선거권을 주자는 논의가 있을 것에 대비해서 그랬을 경우에 이러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하던 됩니다 하는 내용을 저희가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견은 무엇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지 저희 관리기관 입장에서 어떤 선거 부분에 도입하자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니까 도입해도 좋고 도입 안 해도 좋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저희는 결정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이 그 지역의 인구의 상하한이, 또 헌법 재판소 결정에 의해서 지금 선거구 획정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구에 재외국민이 몇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선거구 획정이 헌법상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장 전입 문제만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재일동포의 한 10만 명이 특정한 지역구 선거구에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 선거구 확정 자체가 전제가 무효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그 부분은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도 연구를 좀 해 주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앙선거위 입장에서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이 부여됨으로 인한 선거법 관련 종합적인 법 개정 의견이 있어야 될 거예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운동 방법부터 시작해 가지고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한 일이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그것은 개정 의견에 저희가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전체 법률 의견을 완벽히 검토해 가지고 제안한 일이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법안은 저희가 개정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박주선 위원 중앙선거위 의견이라고 그래서 사실상 정당에다 제출하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서는 그렇게 답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점도 중앙선거위 입장에서는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박주선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趙鎭衡 박주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몰라서 먼저 의결을 하나 해 놓고서 진행을 더 했으면 합니다.

대체토론을 종료하고 나서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건을 지금 먼저 의결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오늘 안건 상정은 의사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대체토론 종결을 전제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은 김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성 위원 충남 당진 출신 김낙성 위원입니다.

먼저 법무부의 국적통합정책단장님 나오셨지

요?

○법무부국적통합정책단장 권영수 예.

○김낙성 위원 헌법재판소는 입법자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 제시를 했는데 법무부 입장에서 볼 때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 보장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국적통합정책단장 권영수 재외동포법에 의한 재외동포는 재외국민과 외국적 동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적 동포는 기본적으로 선거권이 주어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주권자와 일시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마는 영주권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보다는 선거 담당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하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낙성 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답변 중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기준이 없습니까? 그냥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선거권, 피선거권을 다 줘야 되는 것인지 어떤 전과라든가 이런 제한적인 어떤 기준이 없는 것입니까, 교포에 대해서는? 어떻게 유권해석을 내리시는지, 그러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에 나가서 투표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국내에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법을, 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을 받았을 경우에는 실령 외국에 나갔다 하더라도 그분들의 경우에는 선거권이 제한됩니다.

○김낙성 위원 외국에 나가서 범죄행위를 하는 것은 상관이 없고 국내에서 범죄행위에 의해서 전과자가 되었을 때는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외국 법에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의 선거권 여부와 관계가 없고요, 다만 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외국 법이 아니고 국내법의 경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김낙성 위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국내 선거법 기준에 의해서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줘서 투표할 때 투표소가 전 세계적으로 몇 개 정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그것은 몇 명을 단위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낙성 위원 국내법 기준에 봐 가지고 해 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 아니겠어요? 6000명이면 6000명 단위로 해서 투표소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럴 텐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40개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이 지금……

○김낙성 위원 40개만 만들면 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그러니까 저희 국민들이 산재해 있는 곳은 별도로 하고요, 다만 저희 국민들이 좀 밀집해 있어서 투표소 설치가 필요한 그러한 곳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상 투표자 1만 8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투표소 설치했을 경우에 40개 정도……

○김낙성 위원 그런데 외교통상부에서 제시한 것을 보면 뉴욕에 37개, LA에 25개, 오사카에 25개, 주일본대사관에 20개, 시카고에 22개 뭐 이렇게 설치해야 된다는 자료가 제출되었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낙성 위원 그다음에 외교통상부의 오갑렬 대사님께 질의를 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재외 공관의 입장에서 볼 때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투표가 공정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안정된 투표를 해서 투표율을 제고를 시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이 쉽게 이야기해서 재외 선거의 경우 어떻게 해 주는 것이 가장 지금 현재 제시가 여러 가지가 되었는데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대사 오갑렬 투표율 제고에는 공관 투표나 투표소 투표도 일부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김낙성 위원 아니, 투표가 공정하고 안정되게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못하다면 또 문제가 있으니

까……

○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대사 오갑렬 그래서 우편투표가 가장 현실적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국이나 다른 데서도 투표소 투표보다 더 공정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런데 다만 우편투표를 어떻게 사실 하느냐에 대해서는 연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낙성 위원 외국의 예를 보면 투표율이 굉장히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투표율도 제고를 시키고 투표도 부정선거 없이 공정하고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투표를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주는 것이 현지 실정으로 볼 때 가장 바람직하냐……

○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대사 오갑렬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편투표를 하되 다만 어느 기간을 정해서 선거인명부 등록은 본인이 반드시 와서 한번은 공관에서 와서 등록을 하고 그때 자기 암호를 입력을 해 놓고 그리고 돌아가서 나중에 투표는 우편으로 공관에 보내도록 하면 제일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김낙성 위원 그렇게 하고, 법정 선거운동기간이 대선이 23일, 총선이 13일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재외국민 투표는 선거일 9일 전까지만 가능하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대선은 최대 14일, 총선은 4일간의 짧은 선거운동기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제대로 선거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현지에서 이렇게 짧아도 상관이 없습니까?

○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대사 오갑렬 선거운동은 아무래도 공관에서는 인터넷 홍보가 가장……

○김낙성 위원 4일간 줘도?

○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대사 오갑렬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기가 외교부로서는 어렵습니다.

○김낙성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鎭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철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래 위원 질의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친박연대 노철래 위원입니다.

다들 먼저 질의하신 분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사항을 거의 다 질의를 하셔서 가지고 반복되는 것 같아서 생략을 하고, 몇 가지 의문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총선 같은 경우 재외국민한테 투표권을 인정했을 때 이것이 물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예



를 들어 근소한 차로 당락이 결정이 되었을 때 지금 이렇게 문제가 지적된 부분들, 예를 들어 선거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위장 문제 등등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소송이 남발할 수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재외 선거에 있어서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선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적은 표차로 당락이 결정되었을 경우에 재외 선거에 있어서의 공정성을 이유로 해서 얼마든지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외 선거에 있어서 공정성 확보 방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철래 위원** 그런데 최선의 노력이라는 것이 물론 선거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공감되고 후보 당사자들이 확실하게 믿음과 신뢰가 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최선의 노력이다, 무슨 대책 강구다 이렇게 해가지고 될 성질의 것이 아니거든요.

당사자 쪽으로 한정시키면 이것이 자기 생애의 최대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 저속한 표현일지 몰라도 승부수인데 그것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서 사전에 그런 안전장치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에 대한 어떤 안이 나와 있는 것이 없다 이것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재외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철래 위원** 그래요.

그리고 재·보궐선거나 이런 것은 지금 적용을 않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 군데 재·보궐선거가 있는데 재외선거를 도입한다고 한다면 모든 재외공관에서 그 선거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노철래 위원** 국외 거주, 영주권자지요. 주민요건을, 그 사람들이 주민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참정권을 부여하는 게—지방자치 선거의 예를 드는 겁니다—지방자치 이념에

부합되지 않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주민세나 무슨 각종 지방세 같은 걸 납부한 실적 같은 게 있어 가지고 어느 지역에 확실한 어떤 거주나 연고권이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적 한계가 좀 모호하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에서 모든 영주권자에 대해서 지방선거에 참여하도록 한 게 아니고요, 국내거소신고를 한 영주권자의 경우는 국민으로서의 요건과 주민으로서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줘야 된다 하는 그러한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계신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지방선거권을 갖지 않습니다.

**○노철래 위원** 않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노철래 위원** 그러면 거소자들에 대한 그것은 지금 우리가 어떤 주민법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정확하게 확인·파악 같은 게 될 수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내거소신고를 한 분에 한해서 저희가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철래 위원** 지금 국내 거소자와 재외공관, 예를 들어 영사관이나 한인회 등, 신고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파악, 이 보완책이나 이런 것들이 점차 이렇게 단계적으로, 그런 걸 실시하면서 보완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한번에 다 참정권, 그러니까 투표권을 주지 말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좀 실행 가능한 쪽……

아까도 여기 보니까 영주권자가 147만, 그리고 체류자가 154만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주권자보다 우선 체류자 중심으로,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가능할 수 있고 또 국내 연고가 확실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재외선거의 범위와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정책적으로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를 경우에 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노철래 위원** 또 하나는 선거공보나 인쇄물 같은 것 있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노철래 위원 아까 인터넷으로 확인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현지에, 우리 국내 선거법이고 선거이기 때문에 똑같은 어떤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균등이나 원칙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것도 재외국민한테 발송이 되고 그분들이 충분히 그걸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걸 줘야 되는데, 아까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기간, 선거기간으로 볼 때 너무 짧고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지금 계속 연구하는 중입니까, 어느 정도 그게 윤곽이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를 들어서 후보자의 공보를 재외국민들한테 보내려고 하면 후보등록이 다 끝나고 인쇄가 된 후에 저희가 받아서 발송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현재 선거기간이 대선 같은 경우는 23일이고 기타선거는 14일입니다마는 이 14일의 기간에 저희가 그런 공보를 받아서 인쇄해서 보내기, 그것까지는 시간상으로 좀 촉박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외국에서의 투표는 선거일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미리, 적어도 1주일 전에 끝나야, 국내에 회송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1주일 전에 끝나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공보를 보내고 하기가 좀 시간상으로 촉박할 것 같습니다.

○노철래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鎭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걸 위원님, 우리 정개특위에 처음 나오셨는데 인사말씀 간략하게 하시고 그리고 질의 하시고 싶으면 질의하시고 마쳐 주시지요.

○이종걸 위원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안양·만안 출신 이종걸 위원입니다.

정개특위에서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들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趙鎭衡 질의하실 건 없어요?

○이종걸 위원 좀 이따 하겠습니다.

○委員長 趙鎭衡 그러면 최인기 위원 먼저 질의 하시지요.

○최인기 위원 전라남도 나주·화순 지역구의 최인기올시다.

지금 여러분 준비한 쟁점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너무 지금 외교통상부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준비에 대해서 좀 치밀하지 못하다 하는

걸 내가 지적을 합니다. 우선 그동안 여기 문제에 대해서 제기된 것을 한번 되돌아켜서 여러분 준비상황과 비교해서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투표권자, 선거권을 가진 사람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영주권자, 그다음에 해외 일시거주자, 그다음에 이중국적자 문제, 그리고 그냥 국내에서 여러 가지 범죄 사유로 외국에 도피해 가 가지고 있으면서 다시 확인되지 못하고 등록된 사람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방침이 부족하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 질의에 “외국에서 범죄 경력이 있는 것은, 외국법에 따라서 한 것은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 논리가 설득력이 있겠느냐? 미국 법에 의해서 미국에서 살인해 가지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게 그냥 우리는 선거권을 준다, 그게 일반적으로 납득될 수 있겠느냐? 이런 준비, 이런 치밀성 이런 것이 부족하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요.

여러분, 주민등록이 된 사람과 없는 사람 그리고 외국에 체류하는 기간별 통계 그걸 좀 내주세요. 이것은 아마 법무부하고 외교통상부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300만 중에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그리고 각각 되어 있는 사람과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의 해외 체류기간별 통계 이것은 앞으로 정책결정에 대단히 중요하다, 그 통계를 좀 제출해 주세요.

소위가 모레 예정인가요, 위원장님? 그렇지요?

○委員長 趙鎭衡 예, 22일이요.

○최인기 위원 그 전까지, 내일까지 그 통계를 좀 주시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그리고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에 도피해 가지고 간 사람은 등록이 안 되면 안 되겠지만 그 사람이 그냥 통계나 통보 착오로, 우리 국회의원 선거할 때도 경력조회, 경찰서 조회도 착오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문제 등에 대해서 여러분이 치밀하게 연구를 해야 된다, 대비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내가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그 통계를 나라별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주민등록이 된 사람, 없는 사람, 체류기간별 통계.

그다음 두 번째, 그동안 재외선거 문제는 역시 선거관리의 공정성, 선거운동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외교통상부 대사께서 대단히 수월한 업무로 보고 있는 점에 내가 놀랐습니다. 지금 염려스러운 것은 외국에서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어떻게 단속할 것이냐, 이것이 없어 가지고 못한 거예요.

우편투표 가능하다? 문제가 없다, 영국식으로? 문제의 핵심을 모르는 것이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우편투표를 할 경우에 누구를 찍으라고 가서 막 얘기하고, 기부행위 하고, 음식 사 주고 이러면 국내에서처럼 단속할 수 없잖아요? 그럴 경우를 염려하는 것이지 본인이나 아니냐를 가지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기부행위, 우리나라에서 밥 사 주고 하면 금방 가서 단속하잖아요. 외국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우편투표 하면 가족이 투표할 수도 있고 선거운동, 불법적으로 밥 사 주고 모두 찍어라, 각자 그 번호를 찍어라 이렇게 한 것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문제의 핵심을 아시겠어요, 뭘 염려하는지를?

본인 여부를 확인한 대리투표가 아닙니다. 대리투표는 지금 국내에서도 거동이 불편해서 거소 투표한 사람을 가족이, 자기 아버지나 누가, 또 아들이 대신 투표하는 그런 형태의 대리투표도 금방 등록하더라도 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대리투표도 쉽게 생각하는 사고를 고민 안 했다 내가 그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대리투표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선관위, 해외에서 기부행위, 선거운동 위반,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막 하고 다닌다, 단속 인력도 없고 신고하는 사람도 없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더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LA나 일본 같은 경우는 집단으로 있기 때문에 LA에 무슨 인구가 10만 있는 도시를 다 합치면 몇십만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선거구보다 몇 배로 큰 선거구가 LA 선거구입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확보할 것이냐 이것을 문제시하는 것이지……

선관위는 그 점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선관위 사무총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최인기 위원 그 점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여러분 이 법에는 뭘 담을 것이냐,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책으로? 국내법을 적

용 안 할 수 없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최인기 위원 그러면 누가 가서 그걸 적발할 것이냐? 여러분 지금 공소시효 6개월을 3년으로 늘린 것만으로 그 장치가 됐다고 보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문제의 핵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하고 대책을 좀 찾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 선거운동에 대해서, 운동 방법에 대해서 서면으로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편투표 하겠다? 여러분, 아니 이런 감시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편투표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집단적으로 특정 후보 지지하고 운동하고 다니고 우편투표 다 하도록 하면 뭘로 막겠느냐, 누가 했는지를 누가 알 것이냐? 그런 것 때문에 염리를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주관하는 사람이 여기 앉아 있는 국회의원들보다 고민을 더 안 하면 안 되지요.

위원장님, 시간 1분만 더 쓰겠습니다.

○委員長 趙鎮衡 예.

○최인기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대책을 치밀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박주선 위원이 얘기했지만 지금 일본의 조총련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문제 그리고 외국인등록법과 관련된 사람들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치밀하게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선거관리 인력 문제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가 가지고 아까 얘기대로 몇 개월 전에 파견해서 준비하고 이런 것은 하겠지만 거기에 무슨, 아까 공보도 얼마 전에 와야 되고, 오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불확실하고, 최소한 재외 국민들한테 공보도 보내지 아니하고 선거할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누군지는 알고 하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인터넷으로 한다든지 또는 국내 위성방송을 통한 연설, 광고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인기 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후보로 나왔는지, 그 사람의 경력이 무엇인지 이런 것 정도는 알리면서 투표를 유도해야지 그렇지 않고 위성방송? 위성방송이 안 나오는 지역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긴 얘기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치밀하게 좀 연구를 해 달라, 어떻게 알릴 거냐, 아까 내가 선거운동 방법, 선거 후보 고지 방법, 투표권자의 범위와 확정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 그리고 외교통상부도 그런 관점에서 외국에서 선거운동을 단속할 수 없다는, 그런 외국에서의 투표방법, 기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염려를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자료로 내일 오후까지 보내 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알겠습니다.

○최인기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鎭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경석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권경석 위원 창원갑의 권경석 위원입니다.

최인기 위원님께서 질문을 다 해 버리셨는데,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한 네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선관위 사무총장, 2007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 판결의 핵심 내용이 뭐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현재 공선법에서는 주민등록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선거권을 부여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에 관계없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국민이라고 한다면 같은 참정권을 줘야 된다……

○권경석 위원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국민이면 누구에게나 선거권을 줘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권경석 위원 이중국적자 빼고,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그렇습니다.

○권경석 위원 그러면 일시체류자, 영주권자 모두 다 포함되는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권경석 위원 모든 국적자에게 다 선거권을 주라, 지금 주민등록자에 한해서 선거권을 주고 있기 때문에 헌법 불합치다 이런 판결을 내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외국의 경우에도 그렇고 또 일부 체류기간에 따라서 제한하는 논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제기

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권경석 위원 이 부분은 우선 두 가지 면에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출입국관리사무소 등등 몇 군데 물어봐도 해외 체류기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기관이 없어요, 지금 현재. 일본에 5년 체류하고 있는지, 6년 체류하고 있는지 이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최인기 위원님이 아까 자료 요구하셨는데, 일단 법무부, 선관위가 실제 확인을 해서 적어도 체류기간 5년 이내, 10년 이내, 15년, 20년 이내 또 20년 이상 이런 식으로 체류기간별로 재외 국민들의 현황이 파악될 수 있는지 빨리 확인해서 내일까지 자료가 되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법무부!

○법무부국적통합정책단장 권영수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권경석 위원 기본 자료가 바로 이런 자료인데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 만약에 체류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선거권을 제한한다고 할 때, 외국의 경우에 20년 이상 된 사람은 제한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 우리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평등선거에 위배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는, 선관위 사무총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체류기간에 따라서 선거권을 제한할 경우에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 그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원칙적으로 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부분은 명백히 헌법재판소 결정에……

○권경석 위원 불합치되는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불합치되는 건 확실하다고 봅니다.

○권경석 위원 불합치 상태가 그대로 지속되는 거지요? 아까 “입법정책적 판단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다.”라고 애매하게 답변했는데 이거 분명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입장도 정확하게 나중에 서면으로 밝혀 주세요.

다음은 우편투표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아까 오갑렬 대사께서 제3자에게 알려 주고, 기호를 지정해 주고 투표하면 문제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대사 오갑렬** 대리투표의 문제점은 투표용지에다가 자기가 집에서 우편투표 할 때는 혼자서 이렇게 어느 특정 후보에 대해서 표시를……

○**권경석 위원** 영국의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확인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경우예요?

○**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대사 오갑렬** 사전에 선거인명부 등록할 때 본인이 공관에 와서 어떤 암호, 영국의 경우에도 보면 코드를 하는 게 있습니다.

○**권경석 위원** 암호로 투표할 대상을 미리……

○**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대사 오갑렬**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자기가 혼자 지정을 해 놓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나다라마랄지, 그러면 예를 들면 자기는 가를 선정해 놨다, 그러고서 이제 돌아가면 그것은 자기 혼자만 알고 있기 때문에 발설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면 자기 집에서 그걸 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옆에서 매표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어느 특정 후보를 기표한다 하더라도 그 암호와 다르면 그게 무효표 처리가 될 수 있는 방안……

○**권경석 위원** 그러니까 아무도 제3자는 알 수 없다 이 말이지요?

○**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대사 오갑렬** 예, 그렇습니다.

○**권경석 위원**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갖추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대사 오갑렬** 예.

○**권경석 위원** 불법선거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새로운 상황 아닙니까? 사무총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법조치를 해야 되는지, 현재 이 시점에서 어떤 입법조치가 필요한지, 여러 가지 불법선거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우리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입법조치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권경석 위원** 그리고 지금 법으로 모든 사항을 다 규정할 수는 없잖아요? 재외국민 투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일일이 법으로 규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권경석 위원** 시행령에 위임해야 될 분야가 어

떤 것이 있는지, 현재 선관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왔을 텐데 법으로 규정해야 될 사항과 시행령에 위임해야 될 사항을 구분해서 마찬가지로 법안 심의할 때, 우리 소위 할 때 필요하니까 내일까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鎭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정 위원** 강기정 위원입니다.

법무부에 다시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이 법이 개정되어서 재외국민 중에 투표 신청자가 생겼을 때 이 사람이 재외국민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방법이 어떤 방법이지요? 투표 신청자가 재외국민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

○**법무부국적통합정책단장 권영수**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재외국민 중에서 국내 거소 신고한 사람들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원이, 재외국민 중에서 국내 거소 신고자가 작년 말 현재로 6만 4250명입니다. 재외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강기정 위원** 그 부서는 어디 소관입니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법무부에서는 재외국민 중에 국내 거소하는 6만여 명만 관리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재외국민들……

○**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대사 오갑렬** 그러니까 재외 선거인명부에 등록을 할 때 본인이 오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우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허용된다면……

○**강기정 위원** 아무튼 신고를 한 사람……

○**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대사 오갑렬** 여권사본 이런 것을 제출하고요, 그다음에 출입국관리 거기 보면 스탬프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출입국관리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기정 위원** 지금 재외국민 신고가 강제사항은 아니지요?

○**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대사 오갑렬** 지금 말씀하신 재외국민 등록……

○**강기정 위원** 투표 등록과 지금 재외국민으로 등록하는 두 가지를 동시에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대사 오갑렬 그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강기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 본 것은, 재외국민으로 신고할 때 강제사항이 아니지요?

○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대사 오갑렬 예.

○강기정 위원 그러면 어떤 재외국민은 본인이 실제로 재외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안 된 분이 있고,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대사 오갑렬 예.

○강기정 위원 교포 2세, 3세들은 실제로 재외국민으로 신고 안 할 가능성도 있지요?

○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대사 오갑렬 물론입니다.

○강기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만약 투표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어떻게 확인하시냐는 이야기입니다.

○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대사 오갑렬 여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강기정 위원 여권이 없는 분은 어떻게 됩니까?

○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대사 오갑렬 여권이 없으면……

○강기정 위원 재외국민인데……

○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대사 오갑렬 그런 경우는 아마 분실여권으로써 별도로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기정 위원 아니, 재외국민으로서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대한민국 여권이 있을 수 있나요?

○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대사 오갑렬 지금 아마 재외동포하고 이렇게 좀……

○강기정 위원 아니, 재외동포 말고 재외국민.

○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대사 오갑렬 그러니까 재외국민이 재외국민 등록하고 상관 없어요……

○강기정 위원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대사 오갑렬 그것은 잊어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외 선거인명부에 등록을 본인이 해야 되는데 그때 여권을 봐야 그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인지 확인이 됩니다.

○강기정 위원 여권으로 확인한다?

○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대사 오갑렬 예.

○강기정 위원 지금 재외국민으로 신고가 강제 조항이 아니지요? 해외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다 재외국민을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대사 오갑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혼선을 하지 않으시면 좋겠는데 요, 재외국민 등록은 잊어버리시고 재외 선거인명부 등록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기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선거인 등록할 때 그 사람에게 선거권을 부여할지 여부는 재외국민이어야지 부여할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대사 오갑렬 그렇습니다.

○강기정 위원 그러면 국민임을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대사 오갑렬 그것을 여권을 통해서 합니다.

○강기정 위원 여권을 통해서 한다……

○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대사 오갑렬 예.

○강기정 위원 그러면 아까 박주선 위원님 질문을 다시 드려 보면, 조총련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투표권을 신청할 때, 참정권을 신청할 때 부여되어야 됩니까, 안 되어야 됩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세요. 여권이 없는데…… 여권이 없는 국민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대사 오갑렬 여권이 없는 국민이…… 기본적으로는 해외에 나와 있으면 여권이 있습니다.

○강기정 위원 아니, 조총련은 수십 년을 일본에서 살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디 여권이 있어요, 외국을 안 가거나 신고를 안 하면?

○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대사 오갑렬 제일동포들도 대한민국 국적자는 해외여행 할 때 여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강기정 위원 여행도 안 했다니깐요. 여행도 안 하고 지금 수십 년을 일본에서 살아요.

자, 조총련을 예로 듭시다. 이 사람은 여권도 없어요. 그런데 투표를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 국민인지 어떤지 여부를 확인하시냐고, 절차가.

그리고 만약 그런 분이 지금 뭐 150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실은 한 200만 명이었는데 그냥 한 순간에 수십만 명이 투표를 하겠다 하고 신고를 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들이 국민임을 확인하고 투표권을 부여하냐고요.

그것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면 연구를 하시고……

○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대사 오갑렬 예.

○강기정 위원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해 보십시오. 조총련이나 탈북자에게 재외국민투표권을 부여한다고 법적인 결정이 나면, 그들이 신청하면 투표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안 줄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지금 주지 않아야 될 법적 근거가 없지요, 헌법을 따져 보나 여러 가지 법률을 다 따져 보나.

○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대사 오갑렬 조총련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강기정 위원 조총련이나 탈북자나 뭐 이런……

○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대사 오갑렬 제가 알기로는 탈북자는 국내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요.

○강기정 위원 아니,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일본에 머물러 있다……

○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대사 오갑렬 글썄, 그러니까 탈북자가 국내에 들어오기 이전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이 안 되는……

○강기정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근거입니까?

○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대사 오갑렬 국적법상 아직은 인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정 위원 국적법상 그렇고, 조총련은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대사 오갑렬 조총련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강기정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마찬가지로요.

○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대사 오갑렬 국적법상으로는……

○강기정 위원 아니, 아까 박주선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이 모호해서 그랬는데요.

여러 가지 헌법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그분이 재외국민이 아니라는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탈북자나 조총련이 재외국민이 아니라는 것이 어디 있냐고요, 북한에 머물러 있으면 모르겠으나 일본이나 미국으로 와 있다면.

○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대사 오갑렬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마는 법무부에서 국적법상 답변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강기정 위원 법무부 답변 좀 해 보세요.

○委員長 趙鎭衡 지금 현재 오갑렬 영사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안 하신 것 같아서,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내일모레 우리 법안심

사소위거든요. 하니까 그때는 확실하게 법적으로 해서……

아까 박주선 위원의 말씀도 같은 얘기인데, 그것을 확실하게 가지고 나와서 해 줘야 법안심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강기정 위원 다른 질문 조금 더 1분 정도 하겠습니다.

○委員長 趙鎭衡 예.

○강기정 위원 지금 해외에서 우리 재외국민이 선거운동을 하다가 선거법을 위반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이게 범법 사항이 아닐 것 아니에요, 그 자국의 나라에서는? 그러면 이게 범죄인 인도 조약에 의해서 인도되는 사안입니까?

법무부에서 이야기를 좀 해 보시지요. 선거법 위반 사례를 국내로……

뒤에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법무부공공형사과검사 김유철 범죄인 인도 조약에 의하면 쌍방가벌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선거법상 죄가 되어야 되고 해당 국가에서도 죄가 되어야 되는데……

○강기정 위원 그렇지요.

○법무부공공형사과검사 김유철 우리나라만큼 선거법이 복잡한 나라가 없어서 해당 국가에서는 선거법상 처벌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그것이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 문제는 범죄인 인도 조약에 의하더라도 정치범에 대해서는 인도를 안 할 수 있습니다.

○강기정 위원 그렇지요.

○법무부공공형사과검사 김유철 선거 범죄에 대해서, 물론 기부 행위나 이런 파렴치 범죄 말고 어떤 국가에서는 선거 범죄를 정치범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치범이니까 우리는 인도 못 한다’ 이런 경우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기술적인 문제로 범죄인 인도 자체가 한 1년 정도가 걸립니다. 해당 국가에서 심사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6개월 공소시효를 넘겨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기정 위원 딱 정답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설령 6개월 국내 공소시효를 5년으로 연기하더라도 국내에 안 들어오면 그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결론이 맺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점도 우리 논의에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외통부에 좀 여쭙어 봐야 되겠는데, 최인기 위

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영주권자 150만 명 중에 1세대 영주권자들은 대체적으로 주민등록지를 국내에 가지고 있지 않지요, 흔적은.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대사 오갑렬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기정 위원 그분들 파악은 안 되어 있는 겁니까? 그분들도 좀 파악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에 투표권을 줘야 된다, 이런 취지로 선관위에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나 대선에 투표권을 부여하자, 대신 지역구 국회의원에는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다…… 그 고려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그 재외국민이 지역과 후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박주선 위원님도 선거구 확정 문제도 말씀하셨고 유권자 선정에 불합리성이 존재할 수 있다, 특정 지역에 신청을 한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은 주지 말자, 안 주는 것이 맞다 이런 견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당하다, 비례와 대선은 주면서 지역구 안 주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첫 번째,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때 최소한 150만 명에 해당된다고 하는 일시체류자, 이분들은 지역구도 잘 알고 후보도 잘 알고 주민등록지도 다 국내에 있으니까 이 150만 명의 해외 일시체류자는 무조건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권도 주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과거에 주민등록지가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1세대 영주권자 이분들은 본인이 그냥 예전에 전라남도 어디에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도 원하는 사람은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권을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선관위에서 뭘 답변을 해 주셔야 되냐 하면 제가 아까 죽 설명했듯이 국회의원 비례와 대선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재외국민이 다른 것이 있는 거냐 그 점에 대해서 견해를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그동안에는 꼭 다른 것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기에.

이상입니다.

답변 듣고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趙鎭衡 선관위 사무총장 답변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지금 저희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의견을 제시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두자 말자 하는 취지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회에서 논의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참고하시도록 저희가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委員長 趙鎭衡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이종걸 위원 잠깐만……

○委員長 趙鎭衡 이종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종걸 위원 예.

○委員長 趙鎭衡 예, 말씀하시지요.

○이종걸 위원 이종걸 위원입니다.

이런 논의까지 하지는 않았겠지만 우선 우리나라에서 해외 부재자 투표를 실시한 경험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해 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했습니다.

○이종걸 위원 66년도에서 72년 사이에 6대·7대 대통령선거를 해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하고…… 72년이지요, 10월 유신 이때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재외국민 투표권 부활 이런 운동이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았지만 99년 헌법재판소에서의 판단은 그런 기본적인 분위기하에서 제기가 됐고 그런데 그 청구가 기각이 됐어요. 그렇지요?

우리 법무부에서 헌법재판소에서의 두 번의 결정의 차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 2007년 헌법재판소 결정이 1999년도 헌법재판소 결정을 완전히 다 반복했다, 액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여도 2007년도 헌법재판소 결정의 행간을 보면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주민등록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참정권을 주지 않은 것은 불합치다’ 이렇게 되어 있지 참정권 제한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한의 정당성의 논리나 이런 것들은 99년 헌법재판소에 굉장히 자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론에 있어서는 차이를 두고 있지만 이유 실시의 방법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첩적인 게 있단 말이에



요.

법무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누가 오셨나……

○**委員長 趙鎭衡** 선관위 사무총장이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그동안 충분히 검토를 한 거니까. 선관위 사무총장이 책임 있게 답변해 보세요.

○**이종걸 위원** 선관위 사무총장이 말씀해 보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99년에 현재에서 재외국민에게 선거권 부여한 부분에 대해서 기각을 했습니다만 그때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북 관계라든지 또는 선거 기술상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2007년에 이것을……

○**이종걸 위원** 글썄,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얘기로.

99년 현재에서 ‘북한 주민 또는 조총련계 선거 참여 가능성의 문제’ 이래 가지고, 이게 기각의 이유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이유가 없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러면 2007년도 결정의 취지가 북한 주민과 조총련계에는 선거 참여를 허용하라는 취지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현재 결정은 북한 주민이나 조총련이 참여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여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써 대한민국 국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여권으로써 대한민국 국민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종걸 위원** 아니, 대한민국이…… 국적법상의 국적과 여러 가지 재외동포법상의 재외국민, 여러 가지 복잡한 용어들이 있는데 그런데 ‘주민등록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참정권을 주지 않은 것은 헌법 불합치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북한 주민이나 조총련계는 지금 우리 주민등록이 없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국적 유무와 관계없이 선거 참여 등록을 하면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

○**이종걸 위원**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그……

○**이종걸 위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세요?

○**법무부국적통합정책단장 권영수** 법무부에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탈북 북한 주민이나 조총련 관련 부분은, 우리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국적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국적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서 여러 가지 신청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일단 우리 국적으로 있다는 인정은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종걸 위원** 그렇지 않지요. 지금 헌법에 한반도와 부속 도서까지를 우리 대한민국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그 국적법이 실효적인 국적 개념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도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또 지금 조총련계인지 일본 거류민단인가요, 거류민단인지도 불명한 집단들이 있어요. 불분명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어떤 사람 중에는 여권이 조선국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조선국. 그것 보셨어요, 혹시? 북한도 아니고 남한도 아니에요. 조선이야.

그런 사람들을 그냥, 그 여권을 승계해서 일본에서 인정해 주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전면적인 허용이라는 것으로 2007년 결정을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사무총장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총련이라든지 이 부분은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권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내용입니다.

○**이종걸 위원** 아니지요. 여권이 없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도 많고 또 우리 국적을 가지고 있으나 북한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불투명한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금 무슨…… 그런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닙니다. 수만 명이라는 것이지요. 과연 그것에 대한 분류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그게 불분명해요.

더더군다나 또 한 가지 이유, ‘제한된 선거운동 기간 때문에 발생하는 기술상의 어려움’ 이게 청구 기각의 사유인데 2007년 결정에는 이게 해소된 겁니까? 이게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라는 분명한 의미인지 아닌지는 아직 2007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봐 가지고는 분명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학자 중에서는 그게 아니다라는 건

해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1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委員長 趙鎭衡** 예, 말씀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선거 관리의 기술적인 문제는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걸 위원** 과거보다 많이 개선됐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이종걸 위원** 얼마나? 해 본 적도 없는데 얼마나, 어떻게 개선됐다는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를 들어……

○**이종걸 위원** 과거에 해 본 적도 없고 지금 옛날에, 그러니까 1972년 전에 했던 일부 경험에 비추어서…… 그러면 99년부터 2007년 사이의 사정과 2007년 이후의 사정이 굉장히 개선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어떤 게 개선이 됐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를 들면 지금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같은 것도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고요……

○**이종걸 위원** 아이고,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이 지금 미국이나 러시아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지표 같은 게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

○**이종걸 위원** 납세 및 병역에 관한 문제는 제가 다음에 묻겠습니다.

지금 너무…… 이게 표를 행사하고 안 하고의 권리라는 것이 얼마나 명확한 권리 행사입니까?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그 요건을 결정하고 또 요건의 판단에 있어서 2개의 결정 사이에도 이게 굉장히 차이가 많고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납득할 만하게 저희 위원들을 뭔가 지수로…… 그냥 ‘5년 이후에’ 그런 것도 사실은 지금 없지만, ‘체류 기간’ 그런 것도 지금 없지만 이런 것에 관한 것도 좀 자료로써 제시가 되어야만 이게 가능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鎭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강기정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委員長 趙鎭衡** 예, 확인하십시오.

강기정 위원.

○**강기정 위원** 강기정 위원입니다.

답변자 중에……

○**李恩宰 委員** 저희도 질의 있습니다.

○**강기정 위원** 10초만 씩니다.

‘여권이 있어야 국적을 갖는다’ ‘그렇지 않다’ 뭐가 정답이에요, 지금?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자꾸 여권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미국 이런 데서 2세·3세 동포들 재외국민으로 신고 안 해도 다 국적 있잖아요.

아까 누가, 법무부에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여권이 있어야지 국적이 있습니까?

○**법무부국적통합정책단장 권영수** 국적법상으로는 꼭 여권이 있어야 국적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강기정 위원** 아까 ‘여권이 있어야 국적이 있다’ 또 ‘국적을 획득하려면 국내로 들어와야 된다’ 이런 발언을 누가 하셨습니까?

아니, 그런 기본도 안 되는 이야기를 여기서 해서 지금……

○**委員長 趙鎭衡** 아까 권영수 단장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금방 다른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준비들이 덜 돼 가지고요, 준비를 해서 가지고 모레 법안심사소위 할 적에 이런 얘기가 충분히 얘기가 될 수 있게 준비 좀 해 가지고 오세요.

오늘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뭐를 걱정하는지 이런 것을 들으셨으니까 충분한 준비를 좀 해 가지고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기 위원** 투표권자를 여권 가진 사람으로 확인하느냐 대한민국 국민이냐에 대해서 지금 여기 나온 분들이 권위 있게 대답을 못 했어요.

○**委員長 趙鎭衡** 충분히 준비해 가지고 나오세요.

○**최인기 위원** 그러니까 여권 없는 사람 안 주는 거냐, 자기 아버지가 일본 사람인데 지금 아들이 일본 국적 취득하면 일본에서 사는 사람은 주는 거냐 안 주는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명확치가 않아요. 그것 명확히 해 가지고 오세요.

○**委員長 趙鎭衡**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고요, 모레 22일 날 오후 2시에 소위를 할 테니까 그날 준비 좀 잘해 가지고 나오시고 소위 위원님들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잘 좀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 위원(16인)

강기정	권경석	김낙성	김동철
김충조	노철래	박주선	박준선
신지호	이범래	이은재	이종걸
장제원	조진형	최인기	황진하

○출장 위원(1인)

김태원

○청가 위원(1인)

정옥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연호
전문위원	백환기

○정부측 참석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이기선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대사	오갑렬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	권영수
공공형사과검사	김유철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	백운현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장	고광섭